

##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202 호

「약사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9월 3 일
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# 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

####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비만치료제의 오·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(非)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및 오르리스타트를 오·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비만치료제인 “시부트라민 함유제제” 및 “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”를 오·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(안 제2조제15호 및 제16호)

### 3. 의견제출

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[참조 : 마약류관리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8-29 유림빌딩 4층, 전화 : (02) 3156-8080, 팩스 : (02) 3156-8099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- 202 호

「약사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「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-160호, 2009.10.1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.

2010년 9 월 3 일
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# 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

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시부트라민 함유제제
16.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2조(오 · 남용우려의약품 지정)<br>오 · 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<br>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<br>같다.<br>1. ~ 14. (생 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| 제2조(오 · 남용우려의약품 지정)<br>-----<br>-----<br>--.<br>1. ~ 14. (현행과 같음)<br><u>15. 시부트라민 함유제제</u><br><u>16.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</u> |